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9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병주 · 윤종균 · 황명선
박성준 · 박 정 · 양문석
안호영 · 전현희 · 이정문
윤후덕 · 위성곤 · 박지혜
문정복 · 김태년 · 송재봉
소병훈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

이에 법교육의 정의와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법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수 법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교육의 목적과 기본원리를 정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을 종류별로 정의하여 법안의 목적과 취지, 구성을 명확히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법교육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주체, 수립절차, 환류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법교육에 관한 정책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라. 법교육 지원 및 진흥사업의 수행기구로서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 마.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바. 법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한국법교육진흥원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 아.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필수 법교육
대상을 정하고, 각 대상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교육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정의, 인권 및 헌법적 가치에 바탕을 둔 법적 역량과 사고력을 갖추도록 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리) ① 법교육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을 넘어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이념, 가치, 원리 등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국민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② 법교육은 국민의 법적 접근성과 권리 보호를 증진하고, 국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③ 법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

어야 하며,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역량, 사고력 및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계적인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법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법교육진흥센터

마. 그 밖에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청소년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말한다.

4. “시민 법교육”이란 청소년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법교육을 포함한다.

5. “가치 법교육”이란 정의, 인권,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등 헌법과 법률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법교육을 말한다.

6. “필수 법교육”이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대상을 특정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교육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법교육 지원 및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법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법교육종합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법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교육 지원 및 진흥 정책의 목표 설정 및 방향
2. 청소년 법교육, 시민 법교육, 필수 법교육 등 분야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방안
4. 법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5. 제8조에 따른 한국법교육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교육에 관한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의 지원 방안
7. 법교육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8.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법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지역별 계획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별 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법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한국법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6. 제9조에 따른 지역법교육진흥센터의 지정 및 법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의 설립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8. 법교육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업

무 조정에 관한 사항

9. 법교육 시행 및 관련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교육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인사혁신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3. 법원행정처장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7.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법교육진흥원) ① 법교육 지원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법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의 집행
2.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제5장에 따른 필수 법교육 및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 법교육의 시행
4. 법교육기관에 대한 인력, 교재,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
5. 제12조에 따른 법교육 전문강사를 포함한 법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제16조에 따른 교원의 연수 기회 제공
6. 법교육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법교육 시행 및 관련 사업의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위원회에 보고
8. 법교육 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외 협력
9. 제9조에 따른 지역법교육진흥센터 및 제10조에 따른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망 구축
10. 그 밖에 법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한다.

⑥ 진흥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면, 임기, 직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⑦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은 정관, 예산·결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법교육진흥센터) ① 법무부장관은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법교육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법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별 계획과 연계된 지역 주민을 위한 법교육 사업의 시행
2. 지역 법교육 전문 인력 및 교원의 연수 및 활용
3. 지역 실정에 맞는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4. 지역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법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법무부장관은 지역법교육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법교육 전문가 협의회)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 법학교수회 등 법교육을 하는 자 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를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2. 진흥원의 법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3. 법교육 전문가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개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설립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진흥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법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진흥원 및 법교육기관 등으로부터 법교육 목적의 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교육에 관한 연구·학습·활동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법교육 전문강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강사의 자격, 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법의 날 및 법교육 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법의 날이 포함된 주를 법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주간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학술대회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법교육

제14조(청소년 법교육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법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법교육 관련 기초 연구 및 정책 개발
2. 청소년 법교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 법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지원

③ 초·중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내용에 법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초·중등 교육과정에 법교육 반영) ① 국무총리는 가치 법교육

등 이 법에 따른 법교육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교원의 연수 기회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법교육 강의·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시민 법교육

제17조(고등교육에서의 법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법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시민 법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교육 관련 과목의 개설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삶의 전 주기에 걸쳐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에 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교육 등 각종 사회 교육과 연계한 법교육 실시
 4. 기업, 단체 등의 교육과정에 법교육이 포함되도록 권장 및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에는 가치 법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필수 법교육

제19조(공무원에 대한 법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헌법 원리와 가치, 인권 보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치 법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치 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치 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군인 등에 대한 법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법의 원리와 가치,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치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인등에 대한 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찰공무원(검사를 포함한다),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공무원 등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원리와 가치, 인권 보호, 적법절차 및 권한 행사의 한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치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

공적으로 적응·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2.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
4. 「난민법」에 따른 난민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을 위한 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교육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 법교육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진흥원, 지역법교육진흥센터 및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진흥회의 임직원

제28조(운영성과의 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진흥원 및 지역법교육진흥센터의 운영성과와 사업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지역법교육진흥센터 업무를 계속한 자
2. 제11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료 제출, 정보 제공, 보고 요청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법교육 전문강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